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동차 연식은 제작사 별로 적용기준이 달라 소비자에게 정보의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에 연식을 제작 연월로 변경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지 않거나, 판매전에 결함이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가 등록·운행되지 않도록 자동차 제작증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운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동차등록증에 연식을 제작 연월로 변경(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

- 자동차 연식은 제작사 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정보의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연식을 제작연월로 변경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나. 자동차제작증에 내압용기 장착검사 및 결함시정 여부 추가 기록(별지 제10호서식)

-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지 않거나, 판매전에 결함이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가 등록·운행되지 않도록 자동차제작증 서식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형식 및 연식(모델연도)”를 “형식 및 제작연월”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형식 및 연식(모델연도)”를 “형식 및 제작연월”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호 최초등록일 : 년 월 일

① 자동차등록번호		② 차 종	③ 용 도
④ 차 명		⑤ 형식 및 제작연월	
⑥ 차 대 번 호		⑦ 원동기형식	
⑧ 사 용 본 거 지			
소유자	⑨ 성명(명칭)	⑩ 주민(법인)등록 번호	
	⑪ 주 소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유의사항 :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 또는 수소인 자동차의 경우 ⑦번란의 '원동기형식' 은 '구동전동기형식' 을 말합니다.

이
의
의

등록관청명

1. 제 원			
⑫ 제원관리번호 (형식승인번호)			
⑬ 길이	mm	⑭ 너비	mm
⑮ 높이	mm	⑯ 총중량	kg
⑰ 배기량	cc	⑱ 정격출력	Ps/rpm
⑲ 승차정원	명	㉑ 최대적재량	kg
㉒ 기통수	기통	㉓ 연료의 종류	(연비 : km/L)
유의사항 :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 “정격출력(ps/rpm)”은 “구동전동기 정격출력/회전수(kW/rpm)”를, “기통수/배기량(cc)”은 “구동축전지 정격전압/용량(V/Ah)”을 말하며, “연료소비율(km/ℓ)”은 “연료소비율(km/kWh)”을 말합니다. 사용연료의 종류가 수소인 연료전지 자동차의 경우 “정격출력(ps/rpm)”은 “구동전동기 정격출력/회전수(kW/rpm)”를, “기통수/배기량(cc)”은 “연료전지 최고출력(kW)”을 말하며, “연료소비율(km/ℓ)”은 연료소비율(km/kg)”을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 특수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은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 허용되는 최대수직하중을 말하며 견인능력과는 무관합니다.			
2. 등록번호판 교부 및 봉인			
㉔ 구분	㉕ 번호판발급일	㉖ 봉인일	㉗ 발급대행자확인
3. 해당권등록사실(저당권등록의 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을)를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㉘ 구분(설정 또는 말소)			㉙ 일 자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12. 19.> [시행일 : 2019. 1. 1.] 비고란

제 호					자 동 차 제 작 중	
자 동 차 의 표 시	제 원 관 리 (신 고)번 호		차 대 번 호			
	차 종		원 동 기 형 식			
	차 명(형 식)		연식(모델연도)			
	총 중 량		승 차 정 원			
	최 대 적 재 량		배기량(기통수)			
	색 상		원동기 마력			
	길이 · 너비 · 높이		제동장치에 석면 사용 여부	☐ 사용 ☐ 사용 안 함		
내압용기 장착검사증 발급번호						
판매 전 결함시정 여부			☐ 해당없음 ☐ 완료 ☐ 미완료			
제작연월일		년 월 일	등록번호판의 규 격	× (mm)		
최초 양도연월일		년 월 일	공 급 가 액 (부가세 제외)	원		
양 수 인	성 명		주 민 (법 인)			
	(명 칭)		등 록 번 호			
	주 소					
양수인의 신규등록 직접 신청 여부			☐ 직접 신청 ☐ 제작자 또는 판매자 등이 신청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를 제작·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작자 또는 양도인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비고	※ 1.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반품된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4에 따라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는 판매 전에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수출 이행여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수출업자	상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일련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말소등록일	수출면장발급일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8항, 「자동차등록령」 제32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출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별 수출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출을 이행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여 신규등록 신청 또는 폐차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관청 또는 폐차업자가 말소등록을 한 관청으로 통보합니다. ※ 자동차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덧붙이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수출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수출이행여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수출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수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않거나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